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등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2
 - 전자메일 : kbh0810@korea.kr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아니한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 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 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u>아니한</u>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 급하여 지급한다.</p> <p><u><신 설></u></p>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 <u>월정수당, 의</u> <u>정활동비</u> ----- . ----- ----- ----- <u>아니한</u> 월정수당, -----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 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 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 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 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 액 환수한다.</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u> <u>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u> <u>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u> <u>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u> <u>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u> <u>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u> <u>때</u></p> <p>2. <u>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u></p>

<신 설>

고 접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
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
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
다.